

노동조합 협약 정보

기준일: 2025. 7. 1.

* 하단의 스캔본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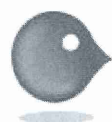
작성자	인사총무팀	이은경	연락처	032-310-3065
확인자	인사총무팀	김태훈	연락처	032-310-3060
감독자	감사팀	이광엽	연락처	032-310-3101

2024년 임금협약서

2024. 11. 18.



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동조합



한국만화영상진흥원

2024년 임금협약서

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(이하“진흥원”이라 한다.)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동조합(이하“조합”이라 한다.)은 이 협약을 체결하며,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·이행할 것을 약속한다.

제1조 (임금협약의 기본원칙)

- ① 본 임금협약은 진흥원과 조합이 맺은 임금협약으로서 조합의 소속으로 전년부터, 임금협약체결 시점기준 재직 중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. 단, 2024년도 중도 채용자는 본 협약 제3조(임금인상)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본 협약 제3조(임금인상) 대상에서 제외하며, 당해 연도 임금인상률을 정률로 적용한다. 이 외 사항은 본 임금협약 및 「임금피크제 운영 규정」을 따른다.
- ③ 진흥원은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임금의 적정액을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, 본 협약에서 누락된 내용 등의 이유로 조합과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.
- ④ 진흥원은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임금 관련이나 기타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, 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서 및 관련 법률에 따른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진흥원 「보수 규정」을 따른다.

제3조 (임금인상)

- ① 조합소속의 일반직은 2024년 기본연봉을 3.9%(2024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2.5% +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2024년 평균호봉승급인상분 1.4%) 인상한다.

- ② 조합소속의 공무원직은 2024년 시급은 「2024년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」를 따른다.
- ③ 조합소속의 계약직은 진흥원 「계약직 관리 규정」 제18조(보수)를 따른다.

제4조 (임금지급의 원칙)

- ① 진흥원은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라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임금지급일이 토·일요일 및 휴일(휴무일)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.
- ② 조합원이 퇴직·휴직·중도입사한 때의 임금(각종수당, 복리후생비 등 포함) 지급은 근무한 날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단, 퇴직 또는 휴직시 초과 사용 및 초과지급된 임금(각종수당, 복리후생비 등 포함)은 환수한다.

제5조 (성과급)

- ① “성과급”이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과 별도로 일시불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.
- ② 진흥원과 조합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예산확보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.
- ③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예산확보 시 진흥원은 「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 편성 운영 지침」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.

제6조 (임금 체계의 개선) 진흥원과 조합은 일반직 및 공무원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.

제7조 (공무원직의 복리후생)

- ① 조합소속의 공무원직에 대하여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」 및 「부천시 생활임금 메뉴얼」에 따라 정액급식비 월 14만원(시급에 포함)을 지급한다.
- ② 조합소속의 공무원직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연 50만원(근속 및 가족 복지

포인트 가산 적용)을 적용한다.

제8조 (유효기간 및 소급적용 범위)

- ① 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소급적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한다.
- ② 본조 제1항에 따라, 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하여 소급되는 임금은 2024년을 넘기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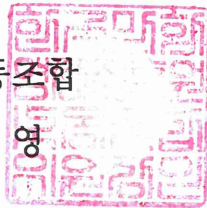
제9조 (준용)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및 단체협약, 진흥원의 제규정을 따른다.

제10조 (협약의 효력) 본 임금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, 진흥원 측 교섭대표와 조합 교섭대표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


2024년 11월 18일

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동조합
위원장 이태영



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
원장 신종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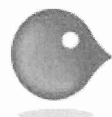
2024년 임금협약서

2024. 11. 18.



민주노총

진국공공운수노동조합



한국만화영상진흥원

경기지역지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분회

2024년 임금협약서

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(이하“진흥원”이라 한다.)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역지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분회(이하“조합”이라 한다.)은 이 협약을 체결하며,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·이행할 것을 확약한다.

제1조 (임금협약의 기본원칙)

- ① 본 임금협약은 진흥원과 조합이 맺은 임금협약으로서 조합의 소속으로 전년부터, 임금협약체결 시점기준 재직 중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. 단, 2024년도 중도 채용자는 본 협약 제3조(임금인상)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본 협약 제3조(임금인상) 대상에서 제외하며, 당해 연도 임금인상률을 정률로 적용한다. 이 외 사항은 본 임금협약 및 「임금피크제 운영 규정」을 따른다.
- ③ 진흥원은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임금의 적정액을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, 본 협약에서 누락된 내용 등의 이유로 조합과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.
- ④ 진흥원은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임금 관련이나 기타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, 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서 및 관련 법률에 따른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진흥원 「보수 규정」을 따른다.

제3조 (임금인상)

- ① 조합소속의 일반직은 2024년 기본연봉을 3.9%(2024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2.5% +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2024년 평균호봉승급인상분 1.4%) 인상한다.

- ② 조합소속의 공무원직은 2024년 시급은 「2024년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」를 따른다.
- ③ 조합소속의 계약직은 진흥원 「계약직 관리 규정」 제18조(보수)를 따른다.

제4조 (임금지급의 원칙)

- ① 진흥원은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라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임금지급일이 토·일요일 및 휴일(휴무일)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.
- ② 조합원이 퇴직·휴직·중도입사한 때의 임금(각종수당, 복리후생비 등 포함) 지급은 근무한 날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단, 퇴직 또는 휴직시 초과 사용 및 초과지급된 임금(각종수당, 복리후생비 등 포함)은 환수한다.

제5조 (성과급)

- ① “성과급”이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과 별도로 일시불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.
- ② 진흥원과 조합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예산확보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.
- ③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예산확보 시 진흥원은 「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 편성 운영 지침」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.

제6조 (임금 체계의 개선) 진흥원과 조합은 일반직 및 공무원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.

제7조 (공무원직의 복리후생)

- ① 조합소속의 공무원직에 대하여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」 및 「부천시 생활임금 메뉴얼」에 따라 정액급식비 월 14만원(시급에 포함)을 지급한다.
- ② 조합소속의 공무원직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연 50만원(근속 및 가족 복지

포인트 가산 적용)을 적용한다.

제8조 (유효기간 및 소급적용 범위)

- ① 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소급적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한다.
- ② 본조 제1항에 따라, 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하여 소급되는 임금은 2024년을 넘기지 않는다.

제9조 (준용)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및 단체협약, 진흥원의 제규정을 따른다.

제10조 (협약의 효력) 본 임금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, 진흥원 측 교섭대표와 조합 교섭대표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
2024년 11월 18일

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

위원장 엄길



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

위원장 신종철

